

자료 열람 요구서

(주)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귀중

본 자료열람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자료의 기록 및 유지 관리 등)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주소

2. 개재사항

열람 목적	분쟁조정 신청내역	분쟁조정 신청일자 : 분쟁조정 신청내용 :
	소송제기 응소내역	소송제기 응소일자 : 소송제기 응소내용 :
열람 범위	열람 자료	
	열람 목적과의 관계	
열람 방법	☐ 열람 ☐ 사본의 제공 ☐ 청취	

▷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1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2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열람을 요구 받은 날부터 8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.
2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3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* 첨부. 열람목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20 년 월 일

신청인 :

(인)